

「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('21.3.25.~9.1. 채용자)」신청 마감 안내

(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기업지원팀)

1. '21.10.31. 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'21.12.15.(수) 18:00(온라인은 24:00까지) 기 지원 받은 대상자의 잔여 지원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선지급 신청 포함, 계속고용확인서 첨부)
 - 지원요건 미충족,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고용조정된 사업주는 신청대상이 아니며, 고용 후 6개월 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퇴직일 전월까지만 신청 및 지원가능
 -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규 신청은 마감되어 신규신청은 지원하지 않음

(예시 1) '21.6.1. 고용 후 6월~7월 간 2개월분만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

→ 8월~9월, 10월 ~11월 2개월, 총 4개월 분 일괄 '21.12.15까지 신청

(예시 2) '21.8.1 고용 후 8월~9월간 2개월분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

→ '21.12.15. 까지 4개월분 일괄신청 ('21.10월~11월 2개월분은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 첨부)

'21.12월~22.1월간 2개월분은 선지급 신청-계속고용확인서 첨부)

*선지급기간 임금대장 및 지급내역은 '22.2월 중 고용센터에 제출

2.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,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 - 주소: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, 웰파크 4층
 -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3. 위 신청기한('21.12.15.) 이후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며, 기간 도과 후 신청에 대하여는 부지급으로 처리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